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이용권/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의 90%~100%동의를 얻어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 가능여부

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 3조의 3에 의거 70세대 이상으로서 집단공급허가대상이나 자치관리가 아닌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90%이상 또는 100%의 동의를 얻어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을 희망할 경우 집단공급이 아닌 특정시설로서 공급가능 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호가목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내 70이상인 수요자에게 저장탱크내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이다. 다만, 동법시행규칙제3조의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 허가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자치관리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를 관련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란다.

2. 제조시설의 같은 건물 내로 이전 시 허가 및 신고 여부

Q 제조시설을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할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지?

A 질의하신 제조시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소 내에서 제조설비를 증설하거나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99. 3월 허가받은 용기충전소의 사업 확장을 위해 가스 내용물 변경 시 '99. 4 이전의 안전거리 기준배관만이 변경허가 기준의 가능 여부

Q 가. '99. 3 허가받은 용기충전소에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50톤 저장탱크의 가스를 프로판에서 부탄으로 변경 시 '99. 4 이전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변경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나. 기존 저장탱크의 가스 변경 없이 배관만 변경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을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99. 4 이전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변경 등이 없이 용기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의 변경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가관청에 문의하시 바라며, 변경허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99. 4이전에 허가받은 충전소는 동법시행규칙 부칙('99. 3. 12)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자치관리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가스를 공급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여부

Q 자치관리인 1,130세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란?

A 자치관리가 이루어지는 1,130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자치관리로 볼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이 그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대표자 단체 등)가 판매사업자 또는 충전사업자 등에게서 공급〈구매〉받은 가스를 입주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안전관리자의 채용, 입주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가스요금징수, 가스공급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행정관청이 자치 여부를 판단 시 이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LPG가스통의 상호표시 여부

Q 13㎏ LPG용기도 상호표시를 해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당해 충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용기내장형난방기용용기인 13㎏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1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적이 27.9+1.39 l 이므로 충전사업자의 상호표시를 하여야 한다.

6. LPG용기의 증지에 관한 법적 근거

Q LPG 용기의 봉인증지와 실량증지에 관한 법적근거는?

A 봉인증지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충전량 표시(실량증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충전량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 제2-6-2조에 규정되어 있다.

7. 여관에서 개인취사의 목적으로 LP가스사용시 검사대상 여부

Q 여관에서 개인취사용으로 LP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검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A 여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종보호시설에 해당되며, 동법시행규칙 제 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종보호시

설에서 주거용이 아닌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단, 동 보호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해당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보호시설 내의 독립된 세대원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 방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 가정용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관에서 특정인(업부, 종업원등 관련종사자)이 24시간 상주 및 그 기간이 지속적이며, 또한, 그 특정인을 위한 취사 등의 목적으로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동 경우가 위의 주거용의 개념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준해서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학교에서 집단급식 허가를 받아 집단급식을 운영하다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가스배상보험 가입주체 여부

Q 학교에서 집단급식허가를 받아 집단급식을 운영하다가 타 업체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위탁한 경우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의 여부는 집단급식허가를 받은 학교와 집단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이 1천㎡ 이상인 경우 독립된 부분의 정의

Q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이 1천㎡이상인 것
가. 독립된 부분이라 함은 어떠한 것인가?
나. 주상복합건물(1층은 상가 2층 이상이 아파트인 경우)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1층 상가에 개별적으로 LPG를 사용할 경우 LPG특정사용시설 검사대상이 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은 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며,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공동주택, 업무시설, 지하실 및 상가 등 포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제1종 보호시설로 LPG특정가스 사용시설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10. 보건소의 1종 보호시설 해당여부

Q 보건소가 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은 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므로, 읍 · 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이므로 병원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동식부탄연소기 중 직결식에 대해 허가 받은 경우 제품 추가확장 시 허가대상 여부

Q 당사는 이동식부탄연소기중 직결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바 카세트식 이동부탄연소기를 추가로 제조하고자 할 때 첨부한 제품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되는지?

A 질의하신 제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기중 카세트식 이동부탄연소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에 허가받은 직결식 이동부탄연소기와는 별도로 동제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개발 중인 일괄소등 콘트롤러가 허가대상 해당 여부

Q 당사에서 개발 중인 일괄소등 콘트롤러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검사를 받은 밸브를 일괄소등 콘트롤러 가스차단부에 설치가 가능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소등 콘트롤러는 허가대상가스용품에서 제외되며 함께 설치되는 가스밸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거나 산업표준화법 제 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13.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바, 지자체가 고시를 제정 · 공포 여부

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 경우 안전거리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고시를 제정하여 공포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법규집의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여 공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고시를 제정하여 공포할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지?

A '03. 11. 7일 개정 ·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중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라)의 규정인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시 · 군 · 구청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경계의 1배 내지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면 될 것이며, 관할 지자체(시 · 군 · 구)가 동 안전거리 관련규정 자체를 고시 등에서 정할지의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현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동 안전거리 규정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례나 규칙, 고시 중 무엇으로 제정내지 개정할지도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14. LPG충전시설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적 근거

Q LPG충전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허가 시에만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감사원 감사에 의한 위법한 허가로 판명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정기검사필증"을 발부하는 행정은 법률상 적법한 행정인지?

A 1999. 4.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이후 허가받은 충전시설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허가 시에만 적용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2003. 11. 7(동법시행규칙 개정)이후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막 상식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 – 파파라치

요즘 우리나라에도 '파파라치'가 많이 생겨났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파파라치는 유럽에서 처음 생겨난 신종 직업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근접해서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들을 말한다.

'파파라치 paparazzi'는 복수형이고 단수는 '파파라초 paparazzo'인데, '파파라초'라는 명칭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달콤한 인생」에 등장하는 신문사 카메라맨 파파라초에서 유래했다.

'파파라초'의 원래 뜻은 이탈리아 어로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말하는데, 그 영화 이후 영화배우, 부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사진을 노리는, 질이 나쁜 사진사들을 가리켜 파파라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1997년 8월 31일,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파리 세느강변의 자동차 충돌로 죽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러고 보면 파파라치들에게 사진 찍힐 일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더 좋다!